

제174회(임시회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본 회의 회 의 록

제2호(부록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

목 차

1.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	1면
2.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	3면
3.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	6면
4.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	9면
5.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	10면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審 查 報 告 書

2007. 5. .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운 영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5월 11일 · 김성배 의원 외 5인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5월 14일

다. 상정일자 : 제17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
제2차 운영위원회(2007. 5. 16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 의 要旨

(제안 설명자 : 김 성 배 의원)

가. 개정이유

- 본회의에서 지역현안사항과 구정에 대하여 심도있고 현장감 있게 발언 (5분 자유발언, 구정질문)을 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2006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,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 씀.
- 자치법규의 본문에서 다른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 낫표(「 」)를 사용함.
- 제1차 본회의에서만 실시토록 되어있는 5분자유발언을 회차와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, 1시간 이내로 되어 있는 시간제한을 삭제함. [안 제32조2 제2항·제3항]
- 임시회 개최일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시간을 “1시간”에서 “100분”으로 변경함. [안 제65조2 제2항]
- 위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명칭을 “징계자격특별위원회”에서 “윤리특별위원회”로 변경함. [안 제70조 제1항, 안 제71조제1항·제2항·제3항, 안 제72조제1항·제2항, 안 제75조, 안 제79조제1항·제2항·제4항, 안 제82조제1항, 안 제83조제1항]

다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50조의2(윤리위원회)
-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제2항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: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(보고자 : 전문위원 라 도 군)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없 음

5. 討 論 要 旨 : 없 음

6. 審 查 結 果 : 원안가결

7. 少數意見의 要旨 : 없 음

8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 음